

신한저축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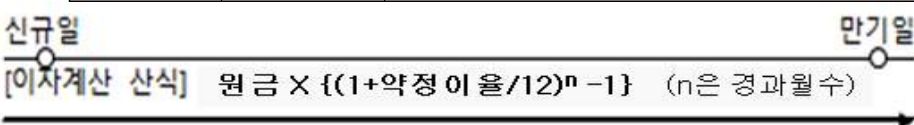
- ◆ 이 설명서는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퇴직연금정기예금특약'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 법 시행령 등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관련 약관과 계약서류가 제공되며, 이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안내됩니다.
- ◆ 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시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2 거래 조건

-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 증서 등 계약서류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가입금액		▷ 최저: 1원이상 ▷ 최대 : DB형-제한 없음 , DC형/IRP형-1억원까지									
가입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1년, 2년, 3년 ▷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기본이자율 (연이자율, 세전)		▷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자율 적용 ※ 재예치시마다 재예치시점의 이율로 변경 적용됨									
예금자 보호여부	DC / IRP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DB [비해당]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자계산방법		▷ 신규(재예치)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지급 (원미만 절사) <table border="1" data-bbox="438 1767 1407 1910"><thead><tr><th colspan="2">구 분</th><th>이자계산식</th></tr></thead><tbody><tr><td rowspan="2">복리식 (월복리)</td><td>월 단위</td><td>원금 × {(1+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td></tr><tr><td>일 단위</td><td>(원금 + 월복리이자) × 이율/365 × 일수</td></tr></tbody></table>  신규일 [이자계산 산식] 원금 × {(1+약정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 만기일		구 분		이자계산식	복리식 (월복리)	월 단위	원금 × {(1+이율/12) ⁿ -1} (n은 경과월수)	일 단위	(원금 + 월복리이자) × 이율/365 × 일수
구 분		이자계산식									
복리식 (월복리)	월 단위	원금 × {(1+이율/12) ⁿ -1} (n은 경과월수)									
	일 단위	(원금 + 월복리이자) × 이율/365 × 일수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만기처리방법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연이율, 세전)	▷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신규일 및 최종예치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원미만 절사) <table><tr><th>예치기간</th><th>이율</th></tr><tr><td>1개월미만</td><td>보통예금이율(0.2%,변동금리)</td></tr><tr><td>1개월이상 ~ 12개월미만</td><td>약정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td></tr><tr><td>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td><td>약정이율 x 8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td></tr><tr><td>24개월이상</td><td>약정이율 x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td></tr></table> ※이율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세번째 자리부터 버림) ※경과월수 : 1개월 미만은 버림 단, 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 50%	예치기간	이율	1개월미만	보통예금이율(0.2%,변동금리)	1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약정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약정이율 x 8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	24개월이상	약정이율 x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
예치기간	이율										
1개월미만	보통예금이율(0.2%,변동금리)										
1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약정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										
12개월이상 ~ 24개월미만	약정이율 x 8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										
24개월이상	약정이율 x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최저금리는 약정이율 x50%]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적용 <table><tr><th>6개월미만</th><th>6개월이상~ 1년미만</th><th>1년이상~2년미만</th><th>2년이상~3년미만</th></tr><tr><td>3개월제 약정이율</td><td>6개월제 약정이율</td><td>1년제 약정이율</td><td>2년제 약정이율</td></tr></table> ※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개월제 약정이율	6개월제 약정이율	1년제 약정이율	2년제 약정이율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개월제 약정이율	6개월제 약정이율	1년제 약정이율	2년제 약정이율								

분할해지 (일부해지)	▷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단, 예금 신규당일에는 분할해지 불가)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제한 사항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등은 불가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을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해지시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사금리가 적용됩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범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신한저축은행 고객센터(1644-77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avings.com)로 문의하실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용어 설명

용 어	내 용
압 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질권설정	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 쉬운 금융용어